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31,895,218	21,956,857
일반회계	715,880,785	21,476,424
특별회계	16,014,433	480,433
기타특별회계	16,014,433	480,433
상수도	9,731,765	291,953
의료급여기금	2,137,922	64,138
기초생활보장기금	2,340,537	70,216
주민소득지원기금	1,570,609	47,118
회원산업단지조성지원	233,600	7,008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없음"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3,527,501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,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7 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보조금, 특별교부세, 조정교부금 등은 성립전 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 한다.